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1-20

대 전 고 등 법 원

청 주 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(청주)2015누1028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A
피고, 항소인	[redacted]군수
제 1 심 판 결	청주지방법원 2015. 2. 5. 선고 2014구합10870 판결
변 론 종 결	2015. 10. 21.
판 결 선 고	2015. 11. 18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3. 9. 4. 원고에게 한 취득세 79,531,150원, 농어촌특별세 7,953,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1-20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면 제6, 7행의 "증인"을 "제1심 증인"으로, 제12, 19행의 각 "이 법정에"을 "제1심에서"로, 제19행의 "진술한 점"을 "진술하였는데, E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원고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진술 부분 중 일부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일견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고,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 부분까지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, 적어도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"으로 각 고치고, 제5면 제8행의 "없고" 뒤에 "(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2002년을 제외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근로소득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, 이는 형식상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형식상의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)"를 추가하고, 제5면 제11행의 "없는 점" 뒤에 "⑧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2003. 4. 19., 2003. 9. 15. 및 2005. 8. 13.에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이자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충북 진천군 G의 일부가 각 임대되었는데, 당시 작성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은 E 또는 H로 되어 있는 점, 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2009. 7. 21.경 청주세무서에 'I음악학원'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"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1-20

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조경란

판사 방태경

판사 박준범